

보도시점 (지 면) 3.20.(수) 조간
(인터넷) 3.19.(화) 12:00

지역 창업 중심(허브)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 조성

- 지자체 대상 공모 및 1개소 선정
-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창업(스타트업) 협력단지(클러스터)로 육성, 지역 경제 견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 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기반시설(인프라)로, 지난 '19년 이후 총 4개의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중이다.

* 스타트업 파크 현황(4개소)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

올해 조성되는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중소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창업(스타트업) 협력단지(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추어 도심형(사례: 서울 텃스타운)과 산업생태계형(사례: 포항 테크노밸리)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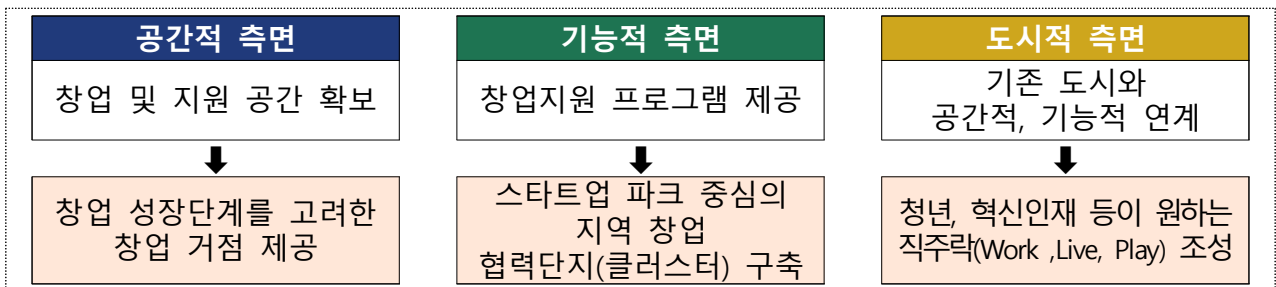
둘째,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상징물(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하면, 새로운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의 조성은 지역 내 핵심 권역이나 향후 핵심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공간 측면)에,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구 제도 및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기능 측면)하며,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도시 측면)을 갖춘 창업 협력단지(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한다.

* 예시 : 중기부(국제(글로벌)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과기부(연구개발특구 등) 등

또한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 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스타트업 파크 조성 방향 >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협력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하여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3.20부터 4.16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bojo.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박은주 (044-204-7660)
	창업생태계과	담당자	사무관	윤종욱 (044-204-7676)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

스타트업 파크 유형 구분

□ 입지 기준

구분	내용	예시
도심형	■ 기존 또는 신 시가지에 스타트업 파크를 거점으로 구축, 도심재생 등을 통해 창업 인프라, 상업·문화·주거시설 조성 및 연계 ■ 예시: 서울 팁스타운	
산업생태계형	■ 앵커기업 중심 산업집적지역, 배후 도심(혁신도시 등) 기반 산업단지에 클러스터가 연계된 지역산업 특화 창업기반 구축 ■ 예시: 포항(지곡) 테크노밸리	

□ 조성 방식 기준

구분	내용	예시
단독·집적형	■ 하나의 부지에 여러 건축물 또는 단독 건축물을 신축·리모델링하여 창업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 필요기능을 집적 개발하는 형태 ■ 예시: 인천 스타트업 파크	
분산·연계형	■ 이미 상업·주거기능·대중교통망이 갖춰진 기성시가지 내 확보 가능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보하여 필요 기능들을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이나 공간들을 연계 확장하는 형태 ■ 예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참고 2

지구단위계획 연계 예시

구분	주요내용
용도지역 세분 (예: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보다 다양한 건축물 용도 도입 가능 ■ 용적률 및 건폐율, 층수 완화 효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별도허용	■ 용도지역상 불허용도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테두리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의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 (예시 :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허용)
건축물 용도	■ 지역의 특수성과 분위기, 특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도는 지정용도로 지정 또는 권장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구역의 특색, 쾌적한 주거환경, 보행동선 유도계획 등이 구체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형태·구조와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층·1층 전면·지하1층 등 건축물의 층별로 용도를 지정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창엽거리를 위해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혁신인재의 보행편의성을 위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을 관리 할수 있음 *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 지정 가능
공개 공지, 쌈지형 공원	■ 쾌적한 도시공간 및 창엽거리 조성을 위해 곳곳에 공개 공지 및 쌈지형 공원을 조성 가능
공동개발, 합벽건축	■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공동개발 지정 또는 권장
용적률, 건폐율, 높이	■ 필요시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인센티브	■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제공, 지정·권장용도, 공동개발,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등을 준수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관련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사례 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 권장용도로 IT 관련 산업 등 지정
- 건축물 용적률 및 최고 높이 등 도시계획 제한 완화
-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사례 ②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 신축 건축물의 30%는 SW, 디지털 콘텐츠 등 신산업 공간으로 활용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스타트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 11개 건물(전자랜드 등) 연결용 공중 보행통로 설치

